

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12. 27) 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학과성적에 의한 석차제도 폐지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을 교과목 성적 상위 자로 개정 (안 제2조)
- 장학생 선발 시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 참작을 소속 학교장의 의견참작으로 간소화 (안 제4조)
- 통장의 중도 해촉에 대비하여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 분기별로 지급 (안 제7조)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에 따른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 중 세입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과목을 삭제함 (안 제9조)

3. 관련법령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 5조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
- 교육부 예규 242호(96. 1. 20 개정) 참고사항
-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라는 중앙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
- 장학생 선발 시 선발기준이 되는 성적을 하향 조정하고 또한 교육감의 의견을 소속 학교장 의견으로 참작토록 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되도록 많은 통장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
- 사하구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2항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중 세입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